

1. 개정 이유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
(안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개정
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조문 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함.

다. 현행 법령 명 적용 및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4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3)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14.6.3)됨에 따라 현행 법령 명으로 개정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에 따른 법 조문 개정함.

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안 제70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을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본인 소유일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의 소유 또는”을 “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다.

제28조 중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3 제1호 비고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2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포지규모	소유	시·군 면적	읍·면·동 리 번지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임차	시·군 면적	읍·면·동 리 번지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생산량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묘			유묘		
신청조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소유일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도)	→	서류 검토 및 묘포지 확인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도)	→	결정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도)	→	지정서 발급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생략)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u>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u>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본인 소유일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u>	3. <u>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생략)

② (생략)

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 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

1. · 2. (현행과 같음)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 ----

-----, 다만, 직무관련 공무

② · ③ (생 략)	<u>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